

개정 중헌

1. 개정취지

- 우리 중단은 1994년 중단개혁(3원 체제 정립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분리)의 성과로 중앙중무기관을 보다 발전된 현대적 조직과 기구인 3원 조직으로 재정립하였다. 중앙중단 고유의 기능과 업무수행을 위해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의 분담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여 한국불교의 비전을 정립하고 중단의 전법 포교 및 대정부 정책, 대사회활동, 승려복지, 중단협의회, 국제불교 등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며 30년을 이어 왔다.
- 하지만 지난 30년간 94중단개혁의 성과로 지탱해온 현재의 중단 조직과 기구로는 더이상 격변하는 시대를 헤쳐갈 동력이 부족하며, 우리 중단이 처한 위기상황을 헤쳐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2의 개혁과 전환의 계기를 찾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노령화, 그로 인한 출가자의 감소와 불자의 감소는 백척간두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기감은 출제가를 막론한 사부대중 공통의 문제의식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문제가 중단 조직개편인 것이다.
- 중단의 총의와 역량을 총무원으로 집중하여 보다 역동적이며 유기적인 조직으로의 일원화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불교가 본연의 위상과 존립을 위한 절박한 요구에 대한 결단이다.

2. 주요내용

-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일원화를 위하여 중헌상 교육원, 포교원 관련 내용 총무원으로 통합 개정(제35조 내지 제72조)
- 현 중헌상 사문화된 복지원 및 승려복지원에 대한 내용은 현실적 기능 및 운영상황을 반영하여 명칭 등 조정 (제47조, 제52조, 제116조, 제117조)
- 현행 교육원, 포교원의 업무 내용은 교육법과 포교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헌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개편 관련 중법 개정 시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부칙 제1조)
- 총무원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단이 설립·출연·인수하는 기관에 대하여 중단 산하기관으로 통칭함. (제47조)
 - 중단 산하기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문화연수원,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하 사회복지재단),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재)아름다운동행, 사)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이하 도반HC), 불교신문사 등(2024. 3월 기준)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5조 ① 중앙중회의원은 총무원장, <u>교육원장</u>, <u>포교원장</u>,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u>교육원포교원</u>의 중무원(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를 겸할 수 없다. [불기 2559(2015). 6. 22 개정]</p> <p>② 임명 또는 선출에 의하여 일시 겸직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종래의 직은 즉각 사직하여야 한다.</p>	<p>제35조 ① 중앙중회의원은 총무원장, <u>교육원장</u>, <u>포교원장</u>, 〈삭제〉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u>교육원포교원</u>〈삭제〉의 중무원(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를 겸할 수 없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6조 다음 사항은 중앙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헌 중법 개정안, 중법안 2. <u>교육원장</u>, <u>포교원장</u>, <u>호계원장</u>, 초심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장,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 선출 [불기 2559(2015). 6. 22 개정] 3. 원로회의 의원 추천 4. 예산안, 결산서,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재산 처분안[불기 2559(2015). 6. 22 개정] 5. 교구획정에 관한 사항 6.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한 동의사항 7. 총무원장, <u>교육원장</u>, <u>포교원장</u> 불신임 결의.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8. 각급 중무기관에 대한 감사 9. 호법부장 임명 동의 10. 중앙중회 의원 징계 11.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 지정에 관한 사항 12. 중무위원 해임 건의 	<p>제36조 다음 사항은 중앙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헌 중법 개정안, 중법안 2. <u>교육원장</u>, <u>포교원장</u>, 〈삭제〉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장,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 선출 3. ~ 6. (현행과 같음) 7. 총무원장, <u>교육원장</u>, <u>포교원장</u>〈삭제〉 불신임 결의.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8. ~ 1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13. 중헌 중법에 의해 중앙중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p> <p>1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44조 ① 중앙중회는 중앙중무기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p> <p>② 총무원, <u>교육원</u>, <u>포교원</u>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중앙중회에 제출하고 중앙중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중무기관은 중앙중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헌 중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중법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p>④ 총무원, <u>교육원</u>, <u>포교원</u>은 차년도 중앙중회에 예산집행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4조 ① 중앙중회는 중앙중무기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p> <p>②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삭제>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중앙중회에 제출하고 중앙중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삭제>은 차년도 중앙중회에 예산집행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7조 ① 총무원장, <u>교육원장</u>, <u>포교원장</u>, <u>사회복지원장</u> 또는 중무위원은 중앙중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중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p> <p>② 중앙중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무원장, <u>교육원장</u>, <u>포교원장</u>, <u>사회복지원장</u> 또는 중무위원은 중앙중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p>	<p>제47조 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삭제> 또는 중무위원, <u>중단 산하기관장</u>은 중앙중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중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p> <p>② 중앙중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삭제> 또는 중무위원, <u>중단 산하기관장</u>은 중앙중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8조 ① 중앙중회는 총무원장, <u>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u>, 초심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장,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p> <p>[불기 2559(2015). 6. 22. 항개정]</p> <p>② 제1항의 불신임의 의결은 중앙중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중앙중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③ 불신임 결의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다만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원로회의 인준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불기 2559(2015). 6. 22. 항 개정]</p>	<p>제48조 ① 중앙중회는 총무원장, <u>교육원장, 포교원장</u>, 〈삭제〉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장,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2조 ① <삭제>[불기 2559(2015). 6. 22.]</p> <p>②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p> <p>③ 제2항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중회의원과 각 교구중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본사주지 포함)으로 구성된다.</p> <p>④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u>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u>,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p> <p>⑤ 각 부서의 부장 및 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호법부장은 중앙중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p> <p>⑥ 총무원장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법으로 정한다.</p>	<p>제52조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u>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기타 중법 및 국가 법령에서 정하거나 중단 대표로 대내외 활동을 위한 직</u>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p> <p>⑤ <u>총무원 각 부서 및 중단 산하기관의 교역 직</u>은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호법부장은 중앙중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5조 ① 중무회의는 총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중책을 심의 의결한다.</p> <p>② 중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원 각 부장, 실장으로 구성한다. <u>다만, 교육원 및 포교원의 부장은 중무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u></p> <p>③ 총무원장은 중무회의의 의장이 된다.</p>	<p>제55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중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원 각 부장, 실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원 및 포교원의 부장은 중무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6조 ① 다음 사항은 중무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헌 중법 개정안, 중법안, 중령안 2. 예산안, 결산서 3. 중무행정의 기본 계획과 총무원 산하 각 부서의 업무계획 4. 중단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찰의 예산 및 기채승인에 관한 사항 6.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7.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총무원 산하 각 부서의 장 및 사찰 주지의 임명에 관한 사항 9. 교구 획정에 관한 사항 10.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 중책에 관한 사항 <p>② <u>교육 및 포교에 관련한 중령을 심의할 때는 교육원 및 포교원의 부장 1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제56조 ① (현행과 같음)</p> <p><항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교 육 원 제1절 교육원장</p> <p>제58조 본종의 교육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원을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59조 ① 교육원장의 자격은 법계 중사, 승 남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학덕을 겸비한 비 구로 한다.[불기 2559(2015). 6. 22.개정]</p> <p>② 교육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중회 에서 선출한다.</p> <p>③ 교육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 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제60조 ① 교육원장은 교육에 관한 중법안을 중앙중회에 제출할 수 있다.</p> <p>② 교육원장은 중헌과 중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원의 중무원을 임명한다.</p> <p>③ 교육원장은 교육원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p> <p>④ 교육원장은 총무원과 협의하여 교육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중회에 제출하며, 책정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p> <p>⑤ 교육원장은 포상을 중정에게 품신할 수 있 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교육원 회의</p> <p>제61조 ① 교육원 회의는 교육원의 업무에 속 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② 교육원 회의는 교육원장, 교육원 각 부·소 장, 교육원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교육원장은 교육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불기 2559(2015). 6. 22.개정]</p>	
<p>제62조 다음 사항은 교육원 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에 관한 중법안 2. 교육원 예산안, 결산서 3. 교육 계획과 교육원 산하 각 부서, 교육기 관, 위원회의 업무계획 	

현행	개정안
<p>4. 포상에 관한 사항 5. 중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원 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총무원 중무회의에 부의할 중령안 8. 각 위원회와 연구소에서 부의한 사항 9. 기타 중요 사항</p>	
<p>제3절 각 부서 및 교육기관</p> <p>제63조 교육원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법으로 정한다.</p>	
<p>제64조 본중은 도제 양성을 위해 교육원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이 상설 교육기관을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자교육원(기초교육기관) 2. 승가대학(기본교육기관) 3. 학림, 승가대학원, 울원, 선학연수원(전문교육기관) 4. 중앙연수원(재교육기관) 5. 특수학교 	
<p>제65조 ① 교육원은 교육위원회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원은 선학, 율학, 교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③ 각종 위원회와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법으로 정한다.[불기 2559(2015). 6. 22.개정]</p>	
<p>제11장 포 교 원 제1절 포교원장</p> <p>제66조 중단은 포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포교원을 둔다.</p>	<p><u>제11장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 삭제></u></p>

현행	개정안
<p>제67조 ①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중회에서 선출한다.</p> <p>② 포교원장의 자격은 법계 중사,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학덕을 겸비한 비구로 한다.[불기 2559(2015). 6. 22.개정]</p> <p>③ 포교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제68조 ① 포교원장은 포교에 관한 중법안을 중앙중회에 제출할 수 있다.</p> <p>② 포교원장은 중헌 및 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교원의 중무원을 임명한다.</p> <p>③ 포교원장은 총무원과 협의하여 포교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중회에 제출하며, 책정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p> <p>④ 포교원장은 포상을 중정에게 품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포교원 회의</p> <p>제69조 ① 포교원 회의는 포교원의 업무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② 포교원 회의는 포교원장, 포교원 각 부실장, 포교원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포교원장은 포교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불기 2559(2015). 6. 22.개정]</p>	
<p>제70조 다음 사항은 포교원 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교에 관한 중법안 2. 포교원 예산안, 결산서 3. 포교 계획과 포교원 산하 각 부서, 위원회의 업무 계획 4. 포상에 관한 사항 5. 포교원 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p>6. 포교사 양성, 임명 및 배치에 관한 사항 7. 총무원 중무회의에 부의할 포교 관련 중령안 8. 각 위원회와 연구실에서 부의한 사항 9. 기타 중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각 부 서</p> <p>제기조 ① 포교원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포교원은 포교방안 연구 및 기획을 위해 포교연구실 및 기타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③ 포교원은 포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④ 위원회와 연구소, 포교사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범으로 정한다. [불기 2559(2015). 6. 22.개정]</p>	
<p>제72조 포교원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범으로 정한다.</p>	
<p>제116조 본종은 승려의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승려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p>	<p>제116조 본종은 승려의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u>승려복지기관</u>을 설치한다.</p>
<p>제117조 ①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 ② 불교사회복지원은 법인으로 설립하며, 총무원장은 당연직이사장이 된다.</p>	<p>제117조 ⊕〈삭제〉 <u>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교사회복지기관을 설치하며 법인으로 둔다.</u> 〈항 삭제〉</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2024년 3월 19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중헌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